

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

(앞쪽)

신고번호	제 호	
신고인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
	성명(대표자)	
	소재지(사업장) (전화번호:)	
화학물질명 (총칭명)		
고유번호 (CAS No. 등 화학물 질 식별번호)		
화학물질의 용도	용도분류체계	
	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	
기타사항		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에 따라
위와 같이 신규화학물질이 신고되었음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환경공단 이사장

직인

